

# ‘인쇄진흥법’ 불 지폈다



2003년 2월27일부터 발효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은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고 출판·인쇄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을 통합,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2장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서 3년마다 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시행과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국제교류의 지원, 시설현대화 지원, 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 등의 각종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쇄업계에서는 법률내용에 인쇄와 출판이 함께 묶여 있는데다가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쉬워 하는 여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인쇄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출판계 일각에서는 법률명에서 아예 인쇄를 빼버린 출판진흥 단독법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쇄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지난 봄부터 뜻있는 인쇄인을 중심으로 차제에 인쇄진흥법을 단독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 인쇄업계의 대표단체인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힘을 모아 단독법률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공정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에 전문연구기관과 가칭 인쇄진흥법 제정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률제정 움직임이 표면화 되었다.

인쇄업계는 지난 1999년에도 인쇄3단체를 중심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내에서 법률안을 만든 바 있으나 의견조율과 여러사정으로 현행법

제정으로 마무리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금년말까지 법률안을 마련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인쇄업계의 통일된 목소리와 힘의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넘어야 할 만만찮은 고비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느 개인의 공명심이나 단체이기주의가 끼어 들어서는 안되며 문화산업인 인쇄를 놓고 인쇄가 문화나 산업이나 하는 잡음도 하등 도움이 되지않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후진기어를 넣는 부작용마저 가져 올지 모른다. 이와함께 인쇄와 관련된 법률 곳곳을 찾아서 활용의 폭을 넓히거나 기존 법조문을 인쇄업계에 실질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들면 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 인쇄가 문화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길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하면 인쇄물의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 중소업체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기협중앙회 등을 통해서 수의계약 하한선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인쇄업계에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출판계에서 인쇄를 출판의 하위개념이나 종속적인 관계로 보려는 시각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인쇄인들이 큰 목표를 향해 온 힘을 쏟는 길외에는 지름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대를 사는 인쇄인들이 다음세대 인쇄인에게 웃음거리로 남겨지는 비극은 없어야겠다.

〈오세익·편집주간〉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출판계에서 인쇄를 출판의 하위개념이나 종속적인 관계로 보려는 시각에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결론은 인쇄인들이 큰 목표를 향해 온 힘을 쏟는 길외에는 지름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 시대를 사는 인쇄인들이 다음세대 인쇄인에게 웃음거리로 남겨지는 비극은 없어야겠다.

”